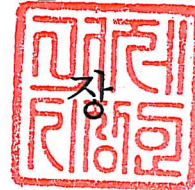


방범용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

범죄차량의 도주로 차단 및 신속한 검거,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 도모를 위한 방범(동영상·차량번호인식)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『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거제시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1년 9월 21일

거 제 시



1. 사업명 : 방범용(동영상·차량번호인식) CCTV 제작 구입 설치
2. 시행청 : 경상남도 거제시
3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11.09.21 ~2011.10.10(20일간)
4. 공고방법 : 거제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geoje.go.kr>) 및 게시판
5. 설치장소

위 치	설치대수	설치유형	비 고
10개소	21대		
고현동 공영주차장앞(고현동 110-2)	2	동영상	
고현동 부산복집앞(고현동 822-3)	2	동영상	
상문동 덕산아파트 입구 (간이역 맞은편)	2	동영상	
장평동 덕산아내옆 원룸촌 용민빌 앞(장평동 692)	2	동영상	
아주동 아주농협지소앞 (아주동 460-4)	2	동영상	
옥포동 옥현상가앞(옥포동 985-3)	2	동영상	
옥포동 은정형외과앞 (옥포동 563)	2	동영상	
장승포 장승포초등학교뒤 (장승포동 307-13)	2	동영상	
동부면 산양삼거리(산양리 366-6)	3	동영상	
하청면 사환마을 입구 (실전리 551-2)	2	차량번호인식	

6. 관련근거

-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
-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)
- 공공기관의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7조(사전의견수렴)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7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제시청 행정과로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간 : 2011.09.21 ~2011.10.10(20일간)

나. 제출내용

-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 등

다. 제출처 : 경상남도 거제시 행정과

라. 제출방법

- 우편 :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(우편번호 656-720)
- 팩스 : 055) 639-3319

마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바. 문의처 : 거제시청 행정과(☎639-3160)

사. 공청회 개최계획 : 없음

※ 붙임 : 의견 제출서(서식) 1부.